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4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송달〉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05호)

2024. 10.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승래 · 박용갑 · 강준현 · 김용만 · 이정문 · 정준호
한준호 · 이해민 · 진선미 · 김영진 · 박홍배 · 김교홍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4. 9. 11.

3. 회 부 일 : 2024. 9. 12.

※ 의안번호 : 390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직접 송달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무적으로도 요구서는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송달되고 있는 점에서 현 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 또는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의 출석 요구서를 국회가 구축 · 운영하는 전자송

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송달 하도록 하여 요구서 송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6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보고서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를 국회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송달하되, 그 밖에 요구서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⑤ (생략)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의 <u>요구서</u> 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⑥ ----- <u>요구서는 국회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송달하되, 그 밖에 요구서-----</u> ----- ----- <u>. 이 경우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u>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¹⁾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서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서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⑤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서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고 해당 요구서는 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하되, 요구서의 송달방법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사소송법」은 송달에 관하여 도달주의 원리에 따라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교부송달’²⁾을 원칙으로 하되, 교부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³⁾을 실시하고,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송달’⁴⁾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보고서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의 송달이 국회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요구서 송달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요구서의 미송달을 이유로 한 서류등의 미제출이나 증인 등의 불출석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회의 보고서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2)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분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4)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요구서는 국회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송달하되, 그 밖에 요구서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문언상 전자송달시스템송달 또는 전자메일송달이 원칙적인 송달방법이고 「민사소송법」상 교부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보충적인 송달방법으로 해석되나, 전자송달시스템송달과 전자메일송달 간 적용상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고 전자송달시스템송달·전자메일송달과 교부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우편송달 간 적용상의 우선순위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임.

따라서, 송달방법 간 우선순위의 적용 및 효력 등의 해석에 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⁵⁾ 「행정심판법」,⁶⁾ 「헌법재판소법」,⁷⁾ 「국세기본법」⁸⁾

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 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당사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전제로 전자적 방식으로 요구서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송달의 적용범위, 요건,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
-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행정심판법」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7) 「헌법재판소법」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①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나 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결정서 등의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④ 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3.>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 8)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여 송달의 효력발생 시점을 ‘수신’ 시로 정하고 있는데, ‘수신’이 해당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가 증인 등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⁹⁾된 때를 의미하는지, 증인 등이 해당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확인’¹⁰⁾한 때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전자적 방식으로 요구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¹¹⁾

문 의 처
02)6788-5017

9) 입법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 또는 “저장”된 때나 관련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10) 입법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에서 송달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

11) 전자적 방식 송달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459	민형배의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요구서 발송
2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104	김정호의원	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는 전자문서로 송달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426	김병기의원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류등 제출 요구 및 제출